



대부업 규제수단의 효과 분석

李 淳 豪 (研究委員, 3705-6187)

외환위기 이후 경기 양극화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사금융 및 대부업시장의 이용자가 급증하였고, 불법 대부업체 등에 의한 고금리부과, 불법추심 등의 금융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. 대부업 및 사금융 시장의 금리상한 등 규제수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.

-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양극화,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였고 사금융 및 대부시장의 이용자가 급증함.
 - 가계 계층간 소득격차를 가중평균한 소득양극화지수(ER계수)는 외환위기 직후 현저히 증가하다 2000~2002년 사이에 소폭 하락하여 안정되었으나 2003년 이후 재상승함.
 -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여 2003년말 37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향안정을 이룬 것으로 판단되나 2007년 5월말 현재 273만명으로 여전히 규모가 큼.
 - 2005년초 11,552개였던 등록대부업체 수는 2006년말 현재 17,21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등록된 대부업의 시장규모는 약 8조 1천억원, 이용자 수는 1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- 등록 대부업체 수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부과 및 불법추심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였고, 대부업법의 금리상한도 하향조정함.
 -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의해 일반 사금융 이용 시 금리는 연 30%로 제한되며, 등록 대부업의 경우 금리상한이 2007년 중 개정되어 연 66%에서 49%로 하향 조정됨.
- 금리상한제의 경우 대부업 및 사금융 이용자의 절박한 사정,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대부업 이용자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받기 어렵고, 고금리에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처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업체에 비해 금리협상력이 현저하게 낮음.
 - 또한 금리상한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등의 강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



법적 상한 이상의 금리부과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며 사후구제 또한 피해를 본 금융이용자의 자구에 의존하게 함.

- 반면 금리상한이 대부업시장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리상한의 하향 조정으로 대부업 시장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 -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7~18%의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, 여러 가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도 연 49%의 이자율은 대부업체의 한계비용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.
- 금융소비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대부업 및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며, 이에 대한 수단으로는 금리상한제와 금융접근성 제고 등이 있음.
 - 대부분의 대부업 이용자는 대부업 이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대부업체를 방문하는 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되고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아 대부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협상력을 갖게 됨.
 - 금리상한제는 법적 강제력으로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 간의 협상력을 조정한 것이며, 금융접근성 제고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협상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방안임.
-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측면이나 실행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금리상한제와 금융접근성 제고는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 - 금리상한제의 경우 사전예방을 위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수단과 함께 사후구제 수단으로 초과금리지불에 대한 강제 환급수단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, 이와 같은 수단은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으로 피해입증과 보상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.
 - 금융접근성제고는 금융소비자가 법적 금리상한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업체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업체는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므로 금리상한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.
- 대부업체 및 사금융 이용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양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안금융을 활성화하며,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.
 - 대형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중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음성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함.
 -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금융기관을 활성화하여 지원함.
 - 제도권 금융기관이 상업적 원리에 의해 서민층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금융시장에서 공급측면의 중층구조를 확립함.